KOSHA GUIDE

C - 75 - 2013

- (7) 수목은 반입 당일에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이식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.
- (8) 장비 작업구간에는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운행 경로를 확보해야 하며,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.
- (9) 운반 시에는 차량의 용량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하고 이중적재를 금지 시켜야 한다.
- (10) 수목을 운반 시에는 2개소 이상에 결박하여 떨어짐을 방지하고, 수목식별 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동시 부딪힘을 예방하여야 한다.
- (11) 장비를 이용하여 수목을 인양, 하차시 및 운반 장소의 작업반경내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.
- (12) 수목의 운반 및 상·하차 시에는 <그림 3>과 같이 헝겊을 싸서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고 대형목인 경우에는 체인 블럭이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 용하여야 한다.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, 하차시 수목이 회전하지 않 도록 걸이를 하여야 하며, 크레인 설치시에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 형 및 주변 상황에 맞게 장비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.



<그림 3> 수목 인양작업